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5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예지·한지아·박덕흠

김대식 · 임종득 · 장동혁

백종헌 · 강대식 · 이달희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 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 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 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 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건강검진) ① (생 략)	제52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②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u>피부양자</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